

국고사업총괄위원회규정

[규정명 변경: 2022.5.27., 2022.10.25.]

2019.06.21.제정	2019.10.01.일부개정	2020.03.01.일부개정	2020.09.01.일부개정
2021.06.01.일부개정	2022.05.27.일부개정	2022.10.25.일부개정	2023.01.02.일부개정
2023.09.01.일부개정	<u>2025.05.23.일부개정</u>		

<미래전략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국고사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다루기 위한 국고사업총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5.27., 2022.10.25.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(개정 2022.10.25.)

1. 국고사업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22.10.25.>
3. 국고사업 운영현황(사업내용,성과달성) 분석 및 재원 간 중복성 조정에 관한 사항
4. 현물 또는 지표관련 예산투자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고사업의 교비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
5.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직원 신규채용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
6.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적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국고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6.1., 2022.10.25.)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6.1.)

③ 기획처장, RISE사업단장, 대학혁신단장, 재정혁신팀장, 미래전략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9.10.1., 2020.3.1., 2021.6.1., 2022.5.27., 2022.10.25., 2023.01.02., 2023.9.1., 2025.5.23.)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23.01.02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국고사업 주관부서) ① 국고사업은 ‘국고사업 총괄업무지침’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각 단위부서에서 주관한다. (개정 2019.10.1., 2021.6.1., 2022.5.27., 2022.10.25.)

②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는 국고사업은 그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주관부서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관계 부서의 협조) ① **미래전략팀**은 국고사업의 재원 간 사업비 중복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9.10.1., 2021.6.1., 2022.5.27., 2022.10.25., 2023.9.1., **2025.5.23.**)

②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학 발전전략 및 특성화전략의 연계성이 포함된 사업 발전계획을 **미래전략팀**으로 제출하고, **미래전략팀**은 연계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(신설 2020.9.1.) (개정 2021.6.1., 2022.5.27., 2022.10.25., 2023.9.1., **2025.5.23.**)

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1.6.1., 2022.5.27., **2025.5.23.**)

1. 심의대상 사업: 대학 내 정부(중앙·지자체) 재정지원사업

2. 사업단 또는 조직 신설이 필요한 사업
3. 학제 및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업
4. 전임교원 또는 정규직원이 채용이 필요한 사업
5. 개인연구과제 제외
6. 인력 채용(비정규직 포함) 및 공간(신규/기존)사용이 필요한 사업

제7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은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